

◆ 2022년 읍 정기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 읍 정기 종합감사 처분요구 목록

연번	소관부서	시 년 행 도	처분요구 (행정상) 조 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제 목
				내역	금액(원)		
	합계	13건	시정10 주의3		6,277,528	훈계2 주의10	
1	□□□	2019~ 2022	시정 (기관경고)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2	□□□	2019~ 2022	주의			주의1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3	□□□	2021	시정	회수	2,342,767	주의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및 정산 소홀
4	□□□	2019	시정			주의1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집행 후 정산 미실시
5	□□□	2021	시정	회수	592,000	주의1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6	□□□	2021	시정			주의1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7	○○○	2019~ 2022	시정 (기관경고)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8	○○○	2019~ 2022	주의 (기관경고)				공용차량 사용 부적정
9	○○○	2019~ 2021	시정	추징	25,000	주의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0	○○○	2019	시정	회수	304,000	주의1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11	△△△	2019~ 2020	주의			훈계2	시설공사 계약방법(분할발주) 부적정
12	△△△	2019~ 2021	시정	회수	2,213,761	주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부적정 및 정산 소홀
13	△△△	2022	시정	회수	800,000	주의1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일련번호: 01]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기관경고)

【내 용】

1. 현 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건 수	219	1	37	101	80
공 사	205	1	37	99	68
용 역	4			1	3
물 품	10			1	9

2. 내 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도 9월 30일까지 □□□에서 추진한 사업 중 하자검사 대상 219건에 대하여 하자책임기간 시작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미 실시 하였을 뿐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정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하자검사 미이행 219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하자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2]

정 선 군
주 의

【제 목】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주의(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1)
【내 용】

1. 현 황

[단위: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착공,준공)	계약자	주업종 (사업량)	보유면허	비고
○○리(양지마을, 중앙교회 옆) 재해취약지 정비공사	17,170	‘19.09.25 ‘19.09.25 ‘19.10.23	○○토건(주) 대표 ○○○	석공, 금속구조물창호 (석축찰쌓기 49㎡, 낙석방지책 20m)	상하수도, 철콘	업종별 업무 내용과 상이한 계약 추진
군계획시설 중3-8호선 보도블럭 교체공사	20,350	‘21.07.15 ‘21.07.15 ‘21.08.12	○○포장건설(주) 대표○○○	철콘 (보도블럭 포장 600.72㎡)	포장	
○○10리(신한은 행앞) 야외무대 정비공사	17,640	‘21.04.27 ‘21.04.27 ‘21.05.17	○○엔유(주) 대표 ○○○	석공 (화강석판석 깔기 58㎡)	시설물 유지관리업	
○○읍 ○○○궁도장 진입로 정비공사	16,640	‘22.03.23 ‘22.03.23 ‘22.04.20	(자)○○토건 대표 ○○○	철콘, 석공, 금속구조물창호 (옹벽 22㎡, 석축찰쌓기 27㎡, 콘크리트포장 76.85㎡, 가드레일 52m)	철 콘, 토공	

2.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 및 업종별 업무 내용을 별지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공사내용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업무연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3]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및 정산 소홀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342,767원, 신분상 주의1)
【내 용】

1.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사 업 명	계 약 일	준 공 일	계약금액(원)	비 고
○○비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공사	2021.02.15	2021.02.26	21,700,000	
○○11리(○골) 군계획시설 배수로 정비사업	2021.04.05	2021.04.30	21,905,220	
○○읍 산불대응센터 사무실 및 창고 신축공사	2021.09.03	2021.10.01	36,80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미처리

사 업 명	계 약 일	준 공 일	계약금액(원)	미정산 금액(원)
○○○마을 ○리○장 ○○콘텐츠 제작 설치	2021.01.15	2021.07.16	241,000,000	2,342,767

2.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 꽃개비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계약체결하여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마을 ○리○장 ○○콘텐츠 제작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42,767원에 대하여 정산 감액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된 2,342,767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누락 및 정산 소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4]

정 선 군

시 정

【제 목】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집행 후 정산 미 실시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신분상 주의1)

【내 용】

1. 경로당 지원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원)

구 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일	비고
계			42,035,000		
상반기	운영비및난방비	□□2리	650,000	2019.1.22	
1분기	운영비및난방비	○○외 8개소	14,755,500	2019.1.23	
2분기	운영비	○○외 8개소	5,037,000	2019.4.2	
3분기	운영비및난방비	○○외 8개소	6,837,000	2019.6.26	
4분기	운영비및난방비	○○외 8개소	14,755,500	2019.10.1	

2. 내 용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제3항에 의거 읍면장은 노인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2022년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에는 경로당 운영의 회계관리 지침을 명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에 따라 경로당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보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19년 ○○경로당외 9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42,035,000원을 지원하고 정산검사 및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정산검사를 미 실시 한 ○○경로당외 9개소에 대해 정산검사를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 시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5]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592,000원, 신분상 주의1)
【내 용】

1.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감사결과(지적사항)	비고
□□14리 ○○일 농로포장 정비공사	17,650	21.03.29 ~21.04.26	○○토건(주) 대표 ○○○	-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거푸집(61 ㎡) 규격인 합판 6회로 시공하 지 않고 유로폼으로 시공함 * 회수금액 : 592,000원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부적절하게 시공하였으나 시정 및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592,000원(제경비 포함)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공사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14리 ○○일 농로포장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시공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592,000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신분상 주의1)

【내 용】

1. 현 황

○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연번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부과일	최초납기일	부과금액	비고
1	최○○	□□리 산215	2021.02.15.	2021.03.15.	2,866,320	
2	백○○	□□리 산214	2021.02.15.	2021.03.15.	2,872,800	
3	정○○	□□리 산214	2021.03.18.	2021.04.18.	8,093,810	

2. 내 용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2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 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과 같이 최○○외 2건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 독촉고지를 미이행 (납부기한 후 최초 발송이력 2021.06.09.)하는 등 체납처분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미이행 3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체납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7]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기관경고)

【내 용】

1. 현 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건 수	199	0	68	94	37
공 사	191	0	66	89	36
용 역	2	0	1	1	
물 품	6	0	1	4	1

2. 내 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에서 추진한 사업 중 하자검사 대상 199건에 대하여 하자책임기간 시작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미실시 하였을 뿐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정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하자검사 미이행 119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하자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8]

정 선 군
주 의

【제 목】 공용차량 사용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주의(행정상 주의, 기관경고)
【내 용】

1. 현 황

(단위 : 건)

공용차량 (등록번호)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내용	배차신청 유무	비 고
산타페 (00어7904)	2019.07.09	이○○ 이○○	양주시	통합민원실 조성 관련 선진지 견학	×	
산타페 (00어7904)	2019.10.18.	황○○	속초시	2019 강원도 이 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관내 배차	
산타페 (00어7904)	2019.11.18.	황○○ 유○○ 이○○ 김○○	원주시	병문안(이장)	×	
산타페 (00어7904)	2020.10.22.	최○○ 이○○	영월군	복지대상자 긴급 병원 입원 연계	×	
산타페 (00어7904)	2021.03.17.	황○○ 황○○ 신○○ 이○○	충주시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	

공용차량 (등록번호)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내용	배차신청 유무	비 고
산타페 (00어7904)	2021.04.28.	황○○ 신○○	대전시	대전철도공사와 업무협의	관내 배차	
산타페 (00어7904)	2022.06.02.	김○○ 공○○ 임○○ 신○○	서울,경기	한국방송공사 업무협의	관내 배차	
산타페 (00어7904)	2022.06.17.	김○○ 임○○ 금○○	태백시	2022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관내 배차	
산타페 (00어7904)	2022.07.28.	김○○	세종시	2022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업무협의	×	

2. 내 용

○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배차관리), 제24조(유류사용 정산) 및 제25조(기록관리)는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운행일지 등의 서류를 비치·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공용차량을 관외 출장용으로 사용하면서 배차신청 없이 사용하거나, 배차신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사용·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공용차량 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사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9]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정 25,000원, 신분상 주의1)

【내 용】

1. 현 황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수수료 징수여부	비고(사유)
계		6건		
1	2021.03.02.	이○○	미징수	분실
2	2021.09.01.	임○○	미징수	분실
3	2020.11.12.	김○○	미징수	분실
4	2019.07.03.	오○○	미징수	분실
5	2019.10.17.	강○○	미징수	분실

2. 내 용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분실·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1명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수수료 징수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수료 징수의 예외 규정 및 수수료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1명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 예외 규정 및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위 현황과 같이 수수료를 미징수(5건 25,000원)하는 등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미징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25,000원을 추징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04,000원, 신분상 주의1)
【내 용】

1.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감사결과(지적사항)	비고
△△리 ○○○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13,500	19.10.28 ~19.11.25	○○건설(주) 대표 ○○○	-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거푸집(28㎡) 규격인 합판 6회로 시공하지 않고 유로폼으로 시공함 * 회수금액 : 304,000원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부적절하게 시공하였으나 시정 및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304,000원(제경비 포함)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공사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리 베레치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시공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304,000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정 선 군
주 의

【제 목】 시설공사 계약방법(분할발주)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주의(행정사 주의, 신분상 훈계2)

【내 용】

1. 현 황

공사건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원)	계약방법	업체명 (업종)	사업현장
□□읍 나들목 MTB 경 관개선 조경공사	‘22.07.12.	‘22.07.18. (‘22.08.05.)	14,058,850	1인 수의계약	(주)○○건설 (조경식재공사업)	○○리
□□읍 나들목 MTB도 로면 유희지 철쭉 식재공사	‘22.07.25.	‘22.07.26. (‘22.08.05.)	8,300,000	1인 수의계약	(주)○○건설 (조경식재공사업)	
2021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1공구)	‘21.04.27.	‘22.05.03. (‘22.05.28.)	19,601,000	1인 수의계약	○○건설(합) (철근콘크리트공사 업)	▽▽리 (○○산)
2021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2공구)	‘21.03.26.	‘22.03.30. (‘22.04.13.)	16,502,330	1인 수의계약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 업)	
2021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3공구)	‘21.04.29.	‘22.05.03. (‘22.05.17.)	19,884,000	1인 수의계약	(주)○○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 업)	
2021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4공구)	‘21.04.29.	‘22.05.04. (‘22.05.17.)	18,890,240	1인 수의계약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 업)	
2021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5공구)	‘21.04.29.	‘22.05.04. (‘22.05.17.)	7,300,000	1인 수의계약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 업)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수의 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고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원 이하의 경우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추정가격이 2천만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등의 경우 1인으로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고,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는 예외적으로 분할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나들목 MTB 경관개선 조경공사”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시기(착공일, 준공일 등)와 장소가 동일하고 동일 공종(조경식재, 콘크리트 포장) 또는 단일 사업으로서 충분히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공사량을 2개 지구(△△△ 나들목 MTB 경관개선 조경공사), 5개 지구(2021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로 각각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해 업무 연찬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부적정 및 정산 소홀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213,761원, 신분상 주의2)
【내 용】

1.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사 업 명	계 약 일	준 공 일	계약금액(원)	비 고
□□읍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2020.05.21	2020.06.18	77,800,000	
○○마을 도시정원 주변정비공사	2021.10.08	2021.10.14	20,00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미처리

사 업 명	계 약 일	준 공 일	계약금액(원)	미정산 금액(원)
계				1,614,084
□□읍 ▽▽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	2019.10.18	2019.11.18	23,689,000	377,319 (사용내역 無)
□□읍 ○○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2020.03.31	2020.04.29	23,310,550	399,861 (입금내역 無)
지방하천(○○천) 유지관리사업	2020.04.06	2020.05.06	36,589,130	481,532 (입금내역 無)
□□읍 ○○지구 군도 유지 관리사업	2020.06.11	2020.07.09	24,164,200	355,372 (사용내역 無)

○ 환경관리비 정산 미처리

사 업 명	계 약 일	준 공 일	계약금액(원)	미정산 금액(원)
계				599,677
□□읍 ▽▽리 농촌생활도로 정비사업	2019.11.05	2019.12.03	20,190,000	105,571 (입금내역 無)
□□읍 ○○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2020.03.31	2020.04.29	23,310,550	66,624 (입금내역 無)
지방하천(○○천) 유지관리사업	2020.04.06	2020.05.06	36,589,130	189,359 (사용내역 無)
□□읍 ▽▽2리(○○동) 하수 관거(맨홀) 정비사업	2020.06.08	2020.07.06	20,347,120	115,965 (입금내역 無)
□□읍 ○○지구 군도 유지관 리사업	2020.06.11	2020.07.09	24,164,200	122,158 (사용내역 無)

2.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계약체결하여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제10조 등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 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 ○○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14,084원과 “△△△ ▽▽리 농촌생활도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의 설계에 계상된 환경관리비 599,677원에 대하여 사용내역이 없거나,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청구되었음에도 진위여부 확인 및 정산감액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된 1,614,084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환경관리비로 계상된 599,677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가 계상 누락 및 정산 소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정 선 군 시 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

【조치기관】 △△△

【조치사항】 시정(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800,000원, 신분상 주의1)

【내 용】

1. 현 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감사결과(지적사항)	비고
2022년 ▽▽리(나들목) 인도개설공사	17,600	'22.05.02 ~'22.05.30	(주)○○건설 대표 ○○○	-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거푸집 (49㎡) 규격인 합판 6회로 시공하지 않고 유로폼으로 시공함. * 회수금액 : 800,000원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부적절하게 시공하였으나 시정 및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800,000원(제경비 포함)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공사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시정] ① “2022년 ○○리(나들목) 인도개설공사” 콘크리트 포장시공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800,000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